

2001년 1월 30일

제103회 임시회

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
(전문위원 박 화 순)

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조례안

I. 제안이유

- 1989년부터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(보건복지부훈령 제78호)에 의하여 관리·운용하여 왔으나,
- 식품위생법령의 개정·시행(2000. 7. 13)으로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

II. 주요골자

-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함(안 제5조)
-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(안 제6조 내지 제8조)
 - 위원수 : 7명 이내 (위원장 : 사회산업국장)
- 기금으로 용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용자대상자, 용자한도, 용자조건, 용자절차 등이 포함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(안 제12조 내지 제13조)

III. 검토의견

- 본 조례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(식품진흥기금) 제1항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·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·운용하도록 동 법이 개정(2000년 1월)되어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중 구 귀속금,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
 -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,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연구사업 지원,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, 위해식품 등에 대한 보상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- 안 제5조 기금의 관리·운용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·관리토록 하며,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그리고 안 제6조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·구성하고

- 조성된 기금으로 용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안 제13조의 용자대상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용자총액, 용자한도, 용자조건, 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식품영업 시설개선 자금 용자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위주로 날로 다양화되는 식생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